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2년 11월 23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3월 25일

나. 제안자: 강서구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25일

라. 상정일자: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1.23.)

※ 주민조례 청구요건 검토

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법 제4조): 해당사항 없음

나. 주민조례청구 요건(법 제5조): 충족 (유효 서명인수 5,074명)

※ 청구권자 총수: 504,741명,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5,048명

다. 청구인명부 제출기한(법 제10조제1항): 기한내 제출(2022.02.23. 제출)

※ 주민조례 청구요건 세부내역 - 주민조례청구 요지서 참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대표청구자 이미선)

□ 제안이유

우리 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급식안전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지역 주민 등의 교육 및 연수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학교급식법」 제3조
- 2) 「식품위생법」 제7조
- 3)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나. 예산조치: 예산편성 필요

다. 해당부서: 위생관리과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제정취지

- 본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청구권자 5,916명의 연서를 받아 지난 2022년 2월 23일 우리 의회로 제출되어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후(최종 유효 서명인수 5,074명) 3월 23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하였으며,
- 3월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명의로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 청구 취지는 우리 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 방사성 물질: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
※ 안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에서는 “방사성 물질”, 그 밖의 조항에서는 “방사성물질”로 쓰고 있는 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용어정의를 참고하여 “방사성물질”로 통일하여 수정 필요
 -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함

-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방사능 등 유해물질: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미세플라스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 제4호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학교급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¹⁾등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한 바 없고,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으며, 2022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통식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기구(FAO)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밝힌 바 유해물질의 범주에서 재검토 필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결과”(2022.03.11.)참조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4조는 방사선물질 검사 체계로
-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선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선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항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하며,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3항에서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등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특별시 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 ▶ 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축산물·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수산물 -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다소비품목(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대상으로 연간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방사능 검사(요오드, 세슘)를 실시→방사능이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된 제품은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을 추가 검사→ 각 기관별 검사결과를 2주간격으로 공개
- ※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 방사능 검사 실시 및 매주 단위로 검사결과 공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

- ▶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제10조에 의거 인증된 식재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납품을 권장하고 있음→학교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함 ※ 서울시 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중

- 이에 따라 제1항의 검사와 관리체계 구축, 제2항의 검사체계 구축, 제3항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요예산,

필요 장비와 인력 등 투입자원 대비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련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식재료 납품기관에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받는 방식을 취함

- 안 제5조는 급식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로 정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인원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위원회 신설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 등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2년 서울시 친환경급식 지원계획」에 따른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등과 같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급식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안 제6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자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방사성물질 검출량을 포함한 검사결과(적합, 기준이하 미량검출)를 공개할 경우 해당 농수산업계 피해 우려 및 공급업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시험결과에 대한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적·부 판정 등의 공개 방안 검토 필요
- 안 제7조는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로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운영위원회,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강행규정)

○ 안 제8조는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강행규정)
- 제2항에서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강행규정)
 - ※ 급식관련 종사자, 학부모, 주민 교육 또는 연수와 관련하여 교육내용이나 예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 검토

○ 안 제9조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임의규정)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강행규정)

○ 안 제10조는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로 본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 및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함

※ 조례 관련 사항 검토 및 준비 기간 등을 위해 시행일 수정 검토 필요

다. 종합의견

- 위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우리구 영유아 및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청구의 취지는 인정되나,
- 상위법 및 상급기관 조례²⁾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과 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 등
- 현행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감안하여 소요예산 및 실제 정책의 시행 가능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2) 「학교급식법」,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우리 구 실정과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 방사능물질 검사 대상을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로 한정하고
 - ‘급식안전위원회 설치’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으며
 - 방사능물질 검사 결과의 정보공개 기준 및 조치사항을 변경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나. 수정내용 (붙임 수정대비표 참조)

- 안 제1조 중 “강서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을 “강서구”로, “영유아 및 학생들”을 “영유아들”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방사성 물질” 이란” 을 ““방사성물질” 이란”으로,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를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유독성물질, 미세플라스틱”을 “유독성물질”로 한다.
- 안 제3조 중 “학교 및 영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 안 제4조의 제목 “(방사선물질 검사 체계)”를 “(방사성물질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5조의 제목 “(급식안전위원회 설치)”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어린이집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시민단체 추천인
-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 수량 · 주기 · 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 안 제6조 중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없이” 을 “지체 없이” 으로 한다.

- 안 제7조 중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운영위원회,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를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로 한다.
- 안 제8조제1항 중 “학교 및 어린이집” 을 “어린이집” 으로, “방사성 물질” 을 “방사성물질”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 안 제10조 중 “학교 및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 을 “「영유아보육법」 ” 으로 한다.
- 부칙안 중 “공포한 날부터” 를 “2023년 1월 1일부터” 로 한다.

※ 붙임 관계 법령 1부.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강서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u>유독성물질</u>, <u>미세플라스틱</u>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 	<p>제1조(목적) ----- <u>강서구</u> ----- ----- ----- <u>영유아들</u>-----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사성물질”이란 -----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 -----. 3. ----- ----- <u>유독성물질</u> ----- ----- -----

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선물질 검사 체계)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영
유아-----

-----.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삭 제>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

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급식안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

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

4. 시민단체 추천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

2. 급식 안전 전문가

3. 시민단체 추천인

<삭 제>

<삭 제>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 수량 · 주기 · 검사방식

	등
제6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u>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u> <u>지체 없이</u> 공개하여야 한다.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운영위원회,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 ----- <u>지체 없이</u> ----- -----.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구청장은 <u>학교 및 어린이집</u>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u>방사성 물질</u> 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 ----- ----- <u>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u> -----.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u>학교 및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u>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 <u>어린이집</u> ----- ----- <u>방사성물질</u> ----- -----. ② ----- ----- ----- -- <u>지원할 수 있다.</u>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u>「영유아보육법」</u> -----

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3년 1월 1일부터 -----
-.

참고

서울시 조례 시행중인 구 운영현황

자치구명	조례명	주관부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 방법	비고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위생관리과	분기별로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과 민간 검사기관 에 검사의뢰하고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주민청구조례로 서울시 최초로 2014년 7월 제정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 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용에 관 한 조례	보육지원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함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 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 원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함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 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 급에 관한 조례	가정복지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함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 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 용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함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 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 용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함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 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과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 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함	주민청구조례로 시작 되었으나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청장 발의로 2022년 2월 조례 제정

※ 그 외 송파구, 광진구가 현재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추진 중

주민조례청구 요지서

1. 청구조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이미선 외 1인

3. 청구취지 및 이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방사능으로부터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4. 주요 추진경위

가.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 2021. 12. 23.

나. 대표자 증명서 발급: 2021. 12. 31.

다. 서명요청 기간: 2022. 1. 4. ~ 4. 26.(제외기간: 2022. 2. 15. ~ 2022. 3. 9.)

라. 청구인명부 제출: 2022. 2. 23.

마.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2022. 2. 28. ~ 3. 10.

바.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2022. 3. 11. ~ 3. 21.

5. 수리기준

청구 수리기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여부(법 제5조, 청구권자*의 유효서명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법 제10조제1항)

* 청구권자의 자격요건(법 제2조)

1)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2)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6. 검토 결과: 수리요건 총족

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법 제4조): 해당사항 없음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법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나.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여부(법 제5조): 총족(유효 서명인수 5,074명)

- 2022년 강서구 조례제정 청구권자 총수(504,741명) 및 연서 주민수(5,048명*)

*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의 1/100(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서명인수 현황】

제출 서명 인수	유효 서명 인수	무효 서명인 수(단위: 명)								
		계	18세 미만	관외 거주	주민 등록 불일치	조회 불가	기타	서명· 서명일 누락	중복 서명	선거권 없는자
5,916	5,074	842	17	66	224	402	21	43	69	0

※ 서명 건 중 무효 사유가 중복인 경우는 1개 사유로 인정하였음

다. 청구인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법 제10조제1항): 기한내 제출(2022.2.23.)

-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기간(2022. 1. 4. ~ 4. 26.)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7. 참고사항

○ 추진일정

수리 · 각하 결정(운영위) ⇒ 청구조례안 의장발의(수리 후 30일 이내) ⇒ 조례안 심사(수리 후 1년 이내)

○ 관련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참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관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2. 3. 11.(금)
담당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이강봉 (☎043-719-4502)	담당자	황진희 연구관 (☎043-719-4503)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 인체노출량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세척하면 상당부분 제거 가능 -

- ✓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님
- ✓ 미역과 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상당부분 제거
-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기구(FAO)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밝힘(17년, '19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 또한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mu\text{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컬음
-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에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습니다.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습니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동물실험(랫드)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28일간 경구투여(6만개/일) 독성을 실시했을때,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19년 식약처 연구결과)
-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 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mu\text{m}$ 이상 $100\mu\text{m}$ 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었습니다(붙임1. 1.~2. 참조).
 - * 검출량 : 액상차 0.0003개/mL, 맥주 0.01개/mL, 간장 0.04개/g, 벌꿀 0.3개/g, 식염(천일염 제외) 0.5개/g, 액젓 0.9개/g, 해조류(미역·다시마·김) 4.5개/g, 티백 4.6개/티백, 젓갈 6.6개/g
 -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 (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 * 검출량 : 낙지·주꾸미 0.03~0.04개/g, 새우·꽃게 0.05~0.3개/g, 조개류 0.07~0.9개/g, 건조 중멸치 1.0개/g, 천일염 2.2개/g

□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임1. 3. 참조).

* 다시마, 미역을 물로 2회 세척하면 다시마는 4.85개에서 0.75개(85%↓)로, 미역은 4.2개에서 1.2개(71%↓)로 감소됨

○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방치(어두운곳)하면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감소됨

-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WHO, Microplastics in drinking water(2019)

○ 세계식량기구(FAO)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

습니다.

* 출처: FAO, Microplastic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2017)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